

# 경제스파이법



황 의 창  
 <인하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변리사>

## 목 차

- I. 서설
- II. 법제정의 배경
- III. 경제스파이법의 내용
  - 1. 개념 정의
  - 2. 처벌대상의 행위유형 및 범위
- IV. 형사처벌
- V. 정책적 시사점
- VI.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필요성

<이번호에 전제>

## I. 서설

전호까지 3회에 걸쳐 미국의 통일 영업비밀법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민사적 구제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뿐 그 침해가 악질적이고 반윤리적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다만, 연방 일반형법이나 개별주법에서 특별히 두고 있는 형사처벌규정 또는 주 판례법(보통법) 등에 의한 보호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기업·국가가 관여하는 조직적 침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행 민사적 성격의 통일 영업비밀법으로 이러한 조직적 산업스파이의 준동을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1996년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II. 법제정의 배경

1996년 미국 내·외의 경제스파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이하 "EEA"라 한다)을 제정하여 동년 10월 11일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서명, 발효되었다.

### 가. 필요성

미산업안전협회(ASIS)가 미국 주요기업 325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Trends in Intellectual Property Loss Special Report)에 의하면 미기업소유정보 도용에 따른 손실액은 1996년 기준 매월 20억 달러(년 2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도용에 따른 손실액 60% 이상이 제조공정 정보·연구개발·경영 전략계획(Strategic Plans)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연방 검사들이 동 범죄를 기소하는데 그 동안 적용되었던 연방법률 즉 “영업비밀법(Trade Secret Act)”, “장물의 주간 유통에 관한 법(Inter State Transportation of Stolen Property Act)”, “컴퓨터 사기와 오용에 관한 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우편과 전신 사기에 관한 법(Mail and wire Fraude Statute)”, “부당 영향과 부패조직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RICO)” 등은 경제스파이 범죄행위를 기소하여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부적절했다.

따라서 영업비밀(Trade Secret)의 절도를 통한 경제적 스파이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같이 경제스파이 범죄행위의 국가 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때 동 범죄의 다양한 행위들을 기소할 새로운 연방법규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미연방 수사국과 산업전문가들의 2년여에 걸친 연구·조사 끝에 동법의 제정을 보았다.

특히 미행정부의 외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대외회보(Annual Report to Congress on Foreign Economic Collection and

Industrial Espionage)는 외국정부의 산업스파이 행위를 미국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영업비밀의 보안을 미국 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물론 세계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산업스파이 행위를 자행하도록 하는 동기와 계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로 외국정부는 미국산업과 기업들을 주목표로 산업스파이 행위를 주도하여 자국의 경제와 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 Ⅲ. 경제스파이법의 내용

### 1. 개념정의

#### (1) 영업비밀

이 법에서의 영업비밀은 모든 종류의 재정(financial)·사업(business)·과학·기술·경제 또는 공학적(engineering) 정보를 의미하여, 원형(patterns)·계획(plans)·편집(compilation)·프로그램 장치(program device)·공식(formulas)·디자인(designs)·시제품(prototypes)·방법(methods)·기술(techniques)·공정(processes)·프로그램(programs)·코드(codes) 등으로서 유형·무형을 모두 포함하며 기록유무에도 제한이 없는 광의적 개념을 택하고 있다. 또 기존의 연방법규가 우편 전신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도용만을 처벌하던 것과 비교할 때 경제스파이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및 매체에 의한 영업정보의 도용과 전송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특



히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한 첨단정보 전송매체 및 방법 등을 열거함으로써 도용방법 및 도용매체를 광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2) 외국의 대리인

외국의 대리인에는 외국정부의 관리·고용인(employee, servant)·대리인(proxy)·대표자(delegate, representative) 모두를 망라한다.

### (3) 외국기관

외국기관(foreign instrumentality)이란 외국정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유·조정·후원·명령·운영 또는 지배되는 모든 기관(agency, bureau, ministry, component, institution, association) 또는 모든 법적, 사업적, 영리적 단체와 회사를 말한다.

### (4) 소유자

소유자란 영업비밀과 관련해서 소유자는 영업비밀의 법적, 실질적 소유권 또는 라이선스(license)를 소지한 개인 또는 단체(entity)를 의미한다.

## 2. 처벌대상의 행위유형 및 범위

동법에 의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대상의 행위 유형과 그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도적으로 또는 영업비밀이 불법적으로 획득된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intending, knowingly) 영업비밀의 도용·복사·파괴·수령·구입·소지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음모 여기에서 “도용”이라 함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허락없이 또는 사기행위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

하는 행위를 말하고, “복사”라 함은 모든 종류의 복사와 communication을 말한다.

(2)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의 관여가 있어야 하며, 외국의 관여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영업비밀 도용(Theft of Trade Secrets) 조항을 적용 여기에서 “외국”이라 함은 외국정부·외국기업·외국매개인 및 대행자 등을 말한다.

(3) 동법은 미국 외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도 만일 해당 행위자가 미국인·미국영주권자·미국단체이거나 해당 행위조장이 미국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 가능하다.

(4) 적법한 미국정부, 주 정부 그리고 산하기관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IV. 형사처벌

동법에 의한 경제스파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외국정부에 의해서 행해진 또는 지원된 산업스파이 행위뿐만 아니라 자국내에서 기업간의 산업스파이 행위도 처벌하나 형량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다.

1. 외국 즉 외국정부·외국기업·외국 매개인 및 대행자 등과 관계된 경우(법 제 1831조)

(1) 개인이 외국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도용 또는 파기하는 경우, 최고 \$500,000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2) 단체가 외국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도용 또는 파기하는 경우, 최고 \$10,000,000의 벌금

## 2. 외국과 관계되지 않은 경우 (법 제1832조)

(1) 개인이 영업비밀을 도용하거나 이를 파기하는 경우, 최고 \$250,000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2) 단체가 영업비밀을 도용하거나 파기하는 경우, \$5,000,000 이하의 벌금

3. 피고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가 그동안 영업비밀 도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윤 및 범법행위에 사용되거나 또는 연관된 모든 자산을 압수

4. 기소과정에서는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의 법원명령이 내려지며, 검찰은 가처분 민사소송도 제기 가능

## V.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외국,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선진기술과 정보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향후 기술 및 정보의 획득시

해당 국가의 산업스파이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단체와 기업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의 보급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정부기관의 역할 증대가 요망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에 의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우리나라가 개발,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연수를 목적으로 많은 신흥공업국의 해외인력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관련기업들에게 국내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관련 법규도 미비한 실정이므로 국내 보호기술 및 영업비밀 등의 불법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즉 부정경쟁방지법 중 영업비밀 보호 규정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I.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필요성

영업비밀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대폭강화하여 산업정보의 유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i) 현행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기업체 현직 임원 또는 직원에서 퇴직자는 물론 기업의 전현직 종업원을 교사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이들의 영업비밀의 유출을 용이하게 하는 협조자에 까지 확

대하고, ii)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 또한 현행 기업의 특유한 생산기술에서,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생산기술로 확대한다. 또, iii)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의 유출을 국내외 구별 없이 동일형량의 처벌을 두고 있으나 이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자기 스스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해외로 유출할 때 또는 국내의 외국인 업체에 누설하거나 그 외국인 기업에 전직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국내형량보다 크게 높인다. 예컨대 현행 국내외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해외 또는 해외기업에 유출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iv)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영업비밀 보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하여 반윤리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소격을 인정하여 공소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정서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끝으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유출사건을 계기로 정부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가칭) 산업스파이 방지법”과 같은 특

별법 제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를 반대한다. 미국이 1996년 경제스파이법을 특별히 제정한 것은 기존의 영업비밀법 등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연방 또는 주의 일반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특별법 형식의 경제스파이법을 제정,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상과 같이 영업비밀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체에 유출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만을 상향조정하는 개정만으로 미국의 경제스파이법과 같은 해외유출방지의 법적 효력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참고로 주요 외국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입법 예를 보더라도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도 영업비밀의 유출을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에 형사처벌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이번 호로서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마치고, 이어지는 다음호에서는 “독일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발특9810**

신간안내

### 나의 아이디어 사업 체험기

## 발명가로 성공하는 길

저자 : 김인석(삼화기연(주) 대표이사)

발행 : 세창출판사(전화 : 723-8660)